

#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이م 입주자모집공고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건물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건물주택 운영 안내  
 -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이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물주택 관람을 사전 방문예약제 운영과 사이버 건물주택(http://평촌두산위브더프라이م.com)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이م 홈페이지(http://평촌두산위브더프라이م.com)를 통해 방문예약,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정비과 - 13983호(2022.08.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65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2층 6개동 총 456세대 중 일반분양 178세대  
 [특별공급 95세대(일반(기관추천) 18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36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23세대 포함) 및 부대부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II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일부)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09월 13일(화)	09월 14일(수)	09월 15일(목)	09월 16일(금)	09월 22일(목)	09월 24일(토) ~ 09월 30일(금)	10월 04일(화) ~ 10월 06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인터넷 청약 (09:00~17:30)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초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분주택 내방접수 (방문예약제운영)	건분주택 내방접수 (방문예약제운영)
장소	· 당사 건분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방문예약제(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예약만 가능) · 당사 건분주택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193번지	

## I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공용주거용)	계약 면적	세대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초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557	01	049.9598	49	49.9598	21.7112	71.6710	29.5502	101.2212	24.1843	48	5	-	10	-	11	26	22	-										
												02	059.9946	59	59.9946	22.6758	82.6704	35.4856	118.1560	27.8959	100	10	10	20	4	9	53	47	4
																						03	084.9057	84	84.9057	24.2749	109.1806	50.2200	159.4006
합계											178	18	13	36	5	23	95	83	4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주택형) 또는 (형광)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나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방법(단위)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식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용시설, 보안 및 설비관리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비율은 현재의 지적공부 상 대지면적(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고, 각 단지의 특정세대에 합산하여 등기 시 등재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인원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단,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일 있을 때에는 계약서의 등기부상 및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m<sup>2</sup>)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수 기준으로, 기타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층 우선 배정은 필로티를 제외한 1층 세대만을 배정하였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 · 층 · 향 · 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미달시 배정 세대수 중 일부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1채(10%)		2채(10%)		3채(10%)		4채(10%)		5채(10%)		
							계약시	계약 후 1개월내	2022.12.15	2023.05.15	2023.11.15	2024.05.15	2024.12.15	입주예정기간			
49	48	105동	2층	2	275,247,000	277,553,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165,840,000	
			3층	2	275,247,000	288,353,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169,080,000	
			4~20층	21	275,247,000	305,753,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21층 이상	4	275,247,000	323,053,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179,490,000	
		106동	2층	1	275,247,000	277,553,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165,840,000	
			3층	2	275,247,000	288,353,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56,360,000	169,080,000	
			4~20층	15	275,247,000	305,753,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21층 이상	1	275,247,000	323,053,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59,830,000	179,490,000	
		101동	1층	2	315,705,900	304,394,1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186,030,000	
			2층	4	315,705,900	316,894,1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189,780,000	
			3층	4	315,705,900	331,994,1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194,310,000	
			4~20층	19	315,705,900	351,994,1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200,310,000	
59	100	21층 이상	9	315,705,900	371,994,1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206,310,000		
		1층	2	315,705,900	304,394,1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186,030,000			
		2층	4	315,705,900	316,894,1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189,780,000			
		3층	3	315,705,900	331,994,1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194,310,000			
104동	4~20층	17	315,705,900	351,994,1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200,310,000			
	2층	4	315,705,900	316,894,1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63,260,000	189,780,000			
	3층	3	315,705,900	331,994,1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64,770,000	194,310,000			
	4~20층	12	315,705,900	351,994,1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200,310,000			
84	30	21층 이상	17	315,705,900	371,994,1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68,770,000	206,310,000		
		2층	2	411,655,900	410,644,100	82,230,000	82,230,000	82,230,000	82,230,000	82,230,000	82,230,000	82,230,000	82,230,000	82,230,000	246,690,000		
		3층	2	411,655,900	427,144,100	83,880,000	83,880,000	83,880,000	83,880,000	83,880,000	83,880,000	83,880,000	83,880,000	83,880,000	251,640,000		
		4~20층	18	411,655,900	453,644,100	86,530,000	86,530,000	86,530,000	86,530,000	86,530,000	86,530,000	86,530,000	86,530,000	86,530,000	259,590,000		
			21층 이상	8	411,655,900	476,744,1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88,840,000	266,52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 제60조)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 가격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이차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칭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예정입니다.

## IV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약식(표기)	49	59	84	합계	비고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2	1	4		
	장기복구 세대공민	1	2	1	4		
	10년 이상 장기복구공민	1	2	-	3		
	중소기업 근로자	1	2	1	4		
	장애인	경기도	1	1	-	2	
		서울특별시	-	-	-	1	
인천광역시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	5	2	7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5	1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20	6	3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4	1	5		
	생애최초 특별공급	11	9	3	23		
합계		26	53	16	9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신.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및 입양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3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여 합\*))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미분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에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4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할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자녀 1년 내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을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V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제)부양)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